

2021 경주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서면 결의서

□ 정관 개정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결합니다.

	동의	부동의	기타 의견
안건1			
안건2			

※ ‘동의’ 또는 ‘부동의’에 ○ 등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.

안건1>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)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관에 ‘제20조’ 및 ‘제24조’를 신설합니다.

개정(신설)
<p>제3장 조직 제20조 (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) ① 이 모임의 해산은 회원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2/3 찬성으로 결의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.</p> <p>제4장 재정 제24조 (재정공개)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.</p>

안건2> 정관의 영문 표기가 올바르지 않아 ‘제1조’를 변경합니다.

개정(변경)	
(현행)	(변경)
<p>제1조 (명칭) 이 모임은 “경주환경운동연합”(약칭‘경주환경연합’)이라 한다. 영문명은 “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yong Ju” (약칭‘KFEM Kyong Ju’)라 한다.</p>	<p>제1조 (명칭) 이 모임은 “경주환경운동연합”(약칭‘경주환경연합’)이라 한다. 영문명은 “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- Gyeongju” (약칭 Gyeongju KFEM)라 한다.</p>

■ 생년월일:

■ 연락처:

■ 작 성 일: 2021년 9월 일

■ 성 명: (인)